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36
----------	-------

발의연월일 : 2023. 9. 8.

발 의 자 : 권철승 · 권인숙 · 소병철
김철민 · 민병덕 · 박 정
김홍걸 · 박용진 · 김영배
박상혁 · 최강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021년 1월 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가 출범함.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 독립기구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행정조직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모두 보유한 공수처의 기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사와 행정 업무를 분리하여 2명의 차장이 각각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명에 불과한 소규모 행정조직으로는 기관 자료제출, 민원 처리,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간 협업에 필요한 행정소요 등 폭증하는 행정업무량을 처리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공수처의 행정 직원을 현행 20명에서 5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함(안 제4조 및 제 11조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명을”을 “2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차장은 수사업무를 관장하는 차장(이하 “수사차장”이라 한다)과 행정 등 수사 외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이하 “행정차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구체적인 업무 분장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차장 1명

제11조제2항 중 “20명”을 “55명”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행정차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행정차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차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차장”을 “행정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를 “행정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차장이,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각각 위원장이 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처장 · 차장 등) ① 수사처 에 처장 1명과 차장 <u>1명</u> 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u><신 설></u>	제4조(처장 · 차장 등) ① ----- ----- <u>2명</u> 을 ----- -----. ② 차장은 수사업무를 관장하는 차장(이하 “수사차장”이라 한 다)과 행정 등 수사 외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이하 “행정차장” 이라 한다)으로 하고, 구체적인 업무 분장은 수사처규칙으로 정 한다.
② (생 략) 제9조(인사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u>차장</u> 3. ~ 5.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인사위원회)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차장 <u>1명</u>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u>2</u> <u>0명</u> 이내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5</u> <u>5명</u> -----.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생략)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전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① -

----- 때에는 수사처규칙으

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

② 행정차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

<신 설>	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행정차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④ 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차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u>차장</u>이 된다. 다만, <u>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u> ② ~ ⑥ (생략)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 <u>행정차장</u>----. --- <u>행정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차장이,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각각 위원장이 되고</u>----- -----. ② ~ ⑥ (현행과 같음)